



더큰 아산
행복한 시민

2018년 탕정면 종합감사결과



감사위원회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종류: 종합감사
- 대상기관: 탕정면
- 실시기간: 2018. 9. 10. ~ 9. 12. (3일간)
- 감사범위: 2015. 8. 1.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1개반 5명
- 장소: 탕정면 회의실
- 근거: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
- 감사중점사항
 -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 각종 공사관련 부실공사 및 부조리 예방
 - 복지업무 추진실태
 -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및 창의적 업무능력 제고

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단위: 건, 원, 명)

합계			시정 (금액)	주의 (인원)	현지조치 (금액)
건수	금액	인원			
12	280,000	4	5 (260,000)	6 (4)	1 (20,000)

2. 감사대상기관 현황 및 실태

- 2015. 8.부터 2018. 9.까지의 탕정면 기관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적법·타당성과 각종 사업추진 실태, 예산집행, 주민복지 지원 업무, 적극적인 업무처리 수범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관인 면사무소에서는 주민욕구와 행정수용에 적극 대응하여 민원편의를 증진 시키는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대다수의 직원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고의적인 횡령이나 유용 사례는 없었으나,
- 일부 직원들이 관련 규정,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소극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총 11건 (회계·공사 3, 민원 2, 복지 1, 일반행정 3, 산업·건설·농지 2)의 사항이 지적되었음.

3. 수범사례

1)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전용 주차장 운영

□ 현황

- 탕정면사무소 주차면수: 51대
- 1일 방문자: 900여명(민원인 600여명, 프로그램 참여 300여명)

□ 문제점

- 면사무소 주차장내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민원인 차량이 주차공간이 없어 2중 주차 및 인도, 화단 등에 주차함

□ 추진내용

- 면사무소 주차장을 민원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
 -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아파트 입주자협의회와 협의하여 면사무소 직원(15명) 차량에 대해 인근 아파트에 주차토록 운영
- 민원 편의를 위해 주차안내 근무 실시('17. 3.부터)
 - 주차안내 공무원 근무조 편성 운영(1일 2인, 08:00~09:20)
- 지역 내 기업체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협조 공문 발송
-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주차증을 제작·배부

⇒ 2017. 6.30. : 티브로드 중부방송 우수사례 보도

[\[중부\]주차 도우미로 나선 탕정면 공무원들...장기주차 '개선' |](#)

2)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탕정면 산업·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디스플레이(주)의 역할과 기업↔주민 간 소통 및 지역 발전에 대해 주민·기업·행정기관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주민 불편사항 및 갈등을 체계적 해소방안 마련으로 지역과 기업의 상생방안 마련
 - 지역발전과 갈등 해소를 위해 기업·주민 중심의 협의의 장 마련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

□ 현황

- 명칭 :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주민 간 소통협의회”
- 구성 : **19명**
 - 삼성디스플레이(주) 주변마을 주민 : 11명
 - 삼성디스플레이(주) 간부 : 7명
 - 탕정면사무소 : 1명

□ 추진내용

- **2017. 7.27.**삼성디스플레이(주)와 주민 간 소통협의회 구성
- **2017.10.30.**지역발전을 위한 협의회 개최
- **2018. 2.28.**삼성디스플레이(주) 2단지 건설 중단에 따른 주민 사전 설명 및 지역 주민의 회사방문 행사 확대 운영 논의
- **2018. 5. 3.**명품 탕정 조성을 위한 꽃향기 나는 마을 조성 및 깨끗한 탕정 만들기 활동 운영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기업·주민이 주도하여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기업이 지역발전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으로 주민 중심의 행정 실천
- 지역 내 각종 행사 및 기업과 마을 간 자매결연을 확고히 하여 자원봉사 활동 전개 및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디딤돌 역할

3) 기업·행정기관 협약 체결 및 이행

- 최근 탕정면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과 행정기관이 협력관계를 구축 하여 해소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
 - 기업과 행정기관이 정례적 환경정화 활동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탕정면 조성에 기여

□ 협약현황

○ 일시 : 2018. 6. 27.(수) 15:00

○ 장소 : 탕정면사무소 회의실

○ 협약체결

- 탕정면사무소 : 면장 유종희
- 삼성디스플레이(주) : 건설팀장 박대원, 단지기획그룹장 한규창
- 삼성엔지니어링(주) : 현장소장 김기술
- 삼성물산(주) : 현장소장 정주용

□ 주요협약내용

- 깨끗하고 아름다운 탕정면 만들기를 위한 마을별 자연정화 활동 합동 실시
- 일회성 전시적 협약을 탈피,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과 행정기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 전개

□ 기대효과

- 기업과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 제공을 위해 협약하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내 쓰레기 문제 해소
- 행정기관 중심의 환경정화를 탈피 지역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범 시민 활동 추진으로 애향심 고취의 계기 마련

4) 모범사례(직원)

- 탕정면, 지방행정주사, 김선태
- 제목: 민원전용주차장 운영 등 민원편의 증진 노력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
- 내용: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전용주차장 운영 및 지역 내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협의회 구성, 깨끗하고 아름다운 탕정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주민 중심의 행정 구현

III.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사항 일람표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건, 원)

일련 번호	제목	처분요구 종류	금액 (인 원)	비고
계	11건 (재정상 260,000원)	시정 5 주의 6	150,000 110,000	회수 추징
1	유연근무제 운영 관리 부적정	주의		
2	청사 출입자 관리 부적정	시정		
3	계약체결 업무 소홀	시정	110,000	추징
4	민방위 업무 소홀	시정 주의		안전총괄 담당관
5	보훈대상자 수당지급 부적정	시정	150,000	회수
6	주민등록 전입신고 통(리)장 사후확인 소홀	주의		
7	주민등록번호 부여업무 처리 소홀	주의		
8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심사 소홀	시정		
9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 부진	주의		
10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보수관리부 기록· 관리 소홀	주의		

2. 현지처분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제목	처분요구	금액(원)	비고
1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시정완료)	20,000	회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유연근무제 운영 관리 부적정

【부 서 명】 탕정면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황

소속	성명	근무일자	신청시간		운영시간	
			출근	퇴근	출근	퇴근
탕정면	A	2018.03.05.	08:30	17:30	08:31	17:30
		2018.03.15.	08:30	17:30	08:33	18:12
		2018.04.18.	08:30	17:30	미등록	미등록
		2018.04.26.	08:30	17:30	08:33	18:04
		2018.05.17.	08:30	17:30	08:32	18:12
		2018.05.29.	08:30	17:30	미등록	미등록

나. 위법·부당 사항

- 2018년도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탕정면에서는 유연근무신청자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맞게 복무관리 시스템 등을 통하여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복무관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탕정면장은

- (주의)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청사 출입자 관리 부적정

【부 서 명】 탕정면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황

(2018. 9. 11. 기준)

읍면동	근무자	청사 출입자 등록 현황			비고
		등록	미등록	등록해제 대상자	
탕정면	18명	21건	무	3건	

나. 위법·부당 사항

- 2018년도 보안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전입, 전출 등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입자에게는 청사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등록하고, 전출자등에 대하여는 등록을 해지하여 시설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탕정면에서는 2018. 9. 11. 기준 전출자 2명(B, C), 휴직자 1명(D)을 포함하여 상기와 같이 21명에 대하여 청사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탕정면장은

- 「2018년도 보안업무 수행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계약체결 업무 소홀

【부 서 명】 탕정면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110,000원(추징)

【지적내용】

가. 현황

구분		계	2015.8.~2015.12.	2016
계약대장등록 미처리	건	11	5	6
	회	65	24	41
	금액(원)	32,872,300	10,418,950	22,453,350

* 세부내역 별첨 참조

나. 위법·부당 사항

- 「아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계약체결)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3호 서식부터 별지 제54호 서식까지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 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53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 서식)를 사용합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58조에 따라 개산급, 선급금 지급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고,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최초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등에 대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계약담당자가 새울 이호조에 계약대장을 작성하면 프로그램으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 입력 없이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가 공개됩니다.

-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별표1(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용역 계약에는 대금공급가액의 100분의 2.5,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는 대금공급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산출결과 5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천 원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조례개정(제3772호, 2013. 7. 30.)을 통하여 2013. 8. 1.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대금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중 별표2에 해당하는 자는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만 해당합니다.
- 그러함에도 탕정면에서는 위와 같이 2015. 8.부터 2016년까지 용역계약으로 처리해야 하는 11건에 대해 별지 제54호 서식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처리 하지 않았으며 이호조 계약대장에 등록하지 않았고, 100만 원 이상 용역계약에 대해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탕정면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장이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라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않은 2건의 계약(탕정면-10, 13, 2016.1.4.)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110,000원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계약관리 등록 미처리 세부내역

연번	적요	지급금액	지급일자	거래처명	품의유형
1	8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5.08.07.	□□	일반
2	8월 청사 무인경비요금	176,000	15.08.17.	◇◇	일반
3	8월 청사 승강기안전점검료	220,000	15.08.17.	○○	일반
4	8월 청사 소방안전 점검료	264,000	15.08.24.	(주)▽▽	일반
5	9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5.09.08.	□□	일반
6	9월 청사 무인경비요금	176,000	15.09.15.	◇◇	일반
7	9월 청사 승강기안전점검료	220,000	15.09.16.	○○	일반
8	9월 청사 소방안전 점검료	264,000	15.09.16.	(주)▽▽	일반
9	3/4분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858,000	15.09.24.	(주)☆☆	일반
10	3/4분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771,600	15.10.01.	◁◁터(주)	일반
11	10월 청사 전기안전점검료	605,550	15.10.08.	□□	일반
12	10월 청사 무인경비요금	176,000	15.10.16.	◇◇	일반
13	10월 청사 승강기 안전점검료	220,000	15.10.16.	○○	일반
14	10월 청사 소방안전 점검료	1,096,000	15.10.26.	(주)▽▽	일반
15	11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5.11.09.	□□	일반
16	11월 청사 무인경비요금	176,000	15.11.16.	◇◇	일반
17	11월 청사 승강기 안전점검료	220,000	15.11.16.	○○	일반
18	11월 청사 소방안전점검료	264,000	15.11.20.	(주)▽▽	일반
19	12월 청사 전기안전점검료	605,550	15.12.10.	□□	일반
20	4/4분기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	858,000	15.12.10.	(주)☆☆	일반
21	12월 청사 무인경비요금	176,000	15.12.14.	◇◇	일반
22	12월 청사 승강기안전점검료	220,000	15.12.14.	○○	일반
23	4/4분기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	771,600	15.12.17.	◁◁터(주)	일반
24	12월 청사 소방안전점검료	264,000	15.12.21.	(주)▽▽	일반
25	1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6.01.07.	□□	일반
26	1월 당정면 예비군중대무인경비 설치비 및 무인경비요금	163,900	16.01.11.	(주)◎◎	일반
27	1월 청사 무인경비요금	176,000	16.01.14.	◇◇	일반
28	1월 청사 소방안전 점검료	264,000	16.01.27.	(주)▽▽	일반
29	1월 프린터기 임차료	110,000	16.01.27.	(주)☆☆	일반

연번	적요	지급금액	지급일자	거래처명	품의유형
30	1,2월 청사 승강기안전점검료	440,000	16.02.17.	○○	일반
31	2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6.02.17.	□□	일반
32	2월 탕정면 청사 및예비군중대 무인 경비 용역	264,000	16.02.17.	(주)◎◎외 1	일반
33	2월 프린터기 임차료	110,000	16.03.14.	(주)☆☆	일반
34	3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6.03.14.	□□	일반
35	2월 청사 소방안전 점검료	264,000	16.03.14.	(주)▽▽	일반
36	3월 탕정면 청사 및예비군중대 무인 경비 용역	264,000	16.03.22.	(주)◎◎외 1	일반
37	4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6.04.29.	□□	일반
38	4월 탕정면 청사 및예비군중대 무인 경비 용역	264,000	16.05.02.	(주)◎◎외 1	일반
39	3,4월 청사 소방안전점검료	1,088,000	16.05.19.	(주)▽▽	일반
40	1/4분기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	1,629,600	16.05.19.	(주)☆☆외 1	일반
41	5월 탕정면 청사 및예비군중대 무인 경비 용역	264,000	16.05.26.	(주)◎◎외 1	일반
42	5월 청사 소방안전 점검료	264,000	16.05.31.	(주)▽▽	일반
43	5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6.05.31.	□□	일반
44	6월 탕정면 청사 및예비군중대 무인 경비 용역	264,000	16.06.20.	(주)◎◎외 1	일반
45	6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6.07.14.	□□	일반
46	1/4분기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	1,629,600	16.07.14.	(주)☆☆외 1	일반
47	7월 탕정면 청사 및예비군중대 무인 경비 용역	264,000	16.07.20.	(주)◎◎외 1	일반
48	6월 청사 소방안전 점검료	264,000	16.07.26.	(주)▽▽	일반
49	7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6.09.05.	□□	일반
50	7월 청사 소방안전 점검료	264,000	16.09.05.	(주)▽▽	일반
51	8월 탕정면 청사 및예비군중대 무인 경비 용역	264,000	16.09.21.	(주)◎◎외 1	일반
52	8월 청사 소방안전 점검료	264,000	16.10.18.	(주)▽▽	일반
53	9-10월 탕정면 청사 및 예비군중대 무인경비 용역	528,000	16.10.18.	(주)◎◎외 1	일반
54	8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6.11.01.	□□	일반
55	9월 청사 소방안전 점검료	264,000	16.11.01.	(주)▽▽	일반
56	10월 청사 소방안전 및 종합정밀점검 용역료	1,906,000	16.11.16.	(주)▽▽	일반
57	10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6.11.16.	□□	일반
58	3/4분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629,600	16.11.16.	(주)☆☆외 1	일반
59	11월 탕정면 청사 및 예비군중대 무인경비 용역	264,000	16.11.18.	(주)◎◎외 1	일반

연번	적요	지급금액	지급일자	거래처명	품의유형
60	11월 청사 전기안전 점검료	605,550	16.12.12.	□□	일반
61	11월 청사 소방안전 점검료	264,000	16.12.22.	(주)▽▽	일반
62	4/4분기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	1,629,600	16.12.27.	(주)☆☆외 1	일반
63	12월 탕정면 청사 및예비군중대 무인 경비 용역	264,000	16.12.29.	(주)◎◎외 1	일반
64	12월 청사 소방안전점검료	264,000	16.12.29.	(주)▽▽	일반
65	12월 청사 전기안전점검료	605,550	16.12.29.	□□	일반
합계		32,872,30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민방위 업무 소홀
【부 서 명】 탕정면, 안전총괄담당관
【행 정 상】 시정·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황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여부	○	○	-	○	
민방위대 편성사실 및 임무 통지여부	-	-	-	-	
민방위대 편성결과 제출	-	-	-	○	
민방위(화생방)장비 관리대장 작성	-	-	-	○	

나. 위법·부당 사항

- 「민방위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연도별 아산시에서는 「민방위 업무지침」을 각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매년 1월 12일까지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편성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민방위 관련 물자,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비축, 설치,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탕정면에서는 지역민방위협의회에 대해 2017년도 구성하지 않고, 지역 민방위 대원에게 편성사실 및 임무 통지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통지하지 않았고 민방위대 편성결과에 대해 아산시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고하지 않았으며 민방위(화생방)장비 관리대장을 2018. 9. 11. 작성 비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 (시정) 탕정면장은 민방위대원에게 편성사실 및 임무를 통지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방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안전총괄담당관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훈대상자 수당지급 부적정

【부 서 명】 탕정면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150,000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황

[표1]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변동일	최종지급	변동사유	착오액(천원)
E	19**.**.*.	2016.04.20.	2016년 5월	사망	150

나. 위법·부당 사항

○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수당 등 지급기준) 제1항에 “참전유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매월 지급하는 수당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의해 관외전출자, 수령거부자, 사망자등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탕정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E의 지급중지 사유(사망)가 발생했음에도 지급중지 및 회수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탕정면장은

-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다 지급한 참전유공자 수당 15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 전입신고 통(리)장 사후확인 소홀

【부 서 명】 탕정면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황

[표1] 전입신고 통(리)장 사후 확인서 누락 내역

(단위 : 건)

구분 연도	누락 내역		
	거주여부 확인	이·통장 날인	관계공무원 날인
계	694	26	4,758
2015	124	7	736
2016	318	9	2,226
2017	220	10	1,567
2018	32	0	229

[표2] 전입신고 통(리)장 사후 확인서 지연일 내역

(단위 : 건)

구분 연도	지연일		
	1일 ~ 15일	16일 ~ 30일	30일 이후
계	4,065	2,684	0
2015	470	266	0
2016	1,335	891	0
2017	1,240	827	0
2018	1,020	700	0

나. 위법·부당 사항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의하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시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 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에게 보내 전입 신고 사항의 사후확인용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탕정면에서는 [표1] [표2] 와 같이 2015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 사항에 대하여 이장에게 사후확인용 자료를 송부 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지연하여 송부 하였으며, 거주 여부 미확인, 이장,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누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탕정면장은

-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번호 부여업무 처리 소홀

【부 서 명】 탕정면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황

[표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주무)결재 누락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결재 누락	144	369	260	0

나. 위법·부당 사항

-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 및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출생 또는 신규등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 표시를 한 후 담당·주무가 직접 “번호 부여대장”의 확인란에 날인하고 “번호조립부”의 실제 사용한 번호에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번호부여대장의 매장마다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대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탕정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5. 9.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상의 실제 사용한 주민등록번호에 “○” 표시를 누락하였고, 번호부여대장 페이지 번호를 미 기재 하였습니다.

- 또한 2006. 9. 6.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서식[별지6호]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31.까지 개정 전 서식을 사용하여 주무·담당의 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탕정면장은

-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심사 소홀

【부 서 명】 탕정면

【행 정 상】 시정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황

1) 2018년도 쌀직불금 신청 현황

사업명	해당연도	사업대상 필지	임차 필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2018년	623필지	204필지

2) 임차 필지에 대한 무단점유 여부 확인 현황

(단위: 필지)

계	계약서류 확인				자경	증빙 없음 ^다	공부 확인	신청 취소 ^라
	계	계약사항 누락 ^가	정상	정당한 임대인이 아닌 경우 ^나				
204	87	56	14	17	4	18	91	4

* 2) 항목별 세부내역 별첨

나. 위법·부당 사항

- 탕정면에서는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쌀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지급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3항 4호에 따르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해당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2018년도 쌀소득보전직불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농업인등에게 신청받은 직불제 신청에 대해 2018. 5.11. 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 면적 등 신청내용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탕정면에서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628필지 중 임차필지에 대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탕정면장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음이 명확하지 않은 95필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 부진

【부 서 명】 탕정면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현황

1)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확인일: 2018.9.12.)

세부사업명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방역소독
예산 집행율	37%	32%

2) 세출예산 배정 실적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유보액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47,545	25,495	19,800	0	0	2,250
방역소독	30,050	0	19,002	10,000	0	1,048

나. 위법·부당 사항

- 탕정면에서는 도시경관 향상 및 감염병 예방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공원화, 방역소독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성립예산에 대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월별 배정요구 하였습니다.
- 그러나 탕정면에서는 2018년도 국토공원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봄·여름철 기간제 근로자 사용 5회 8,455,570원, 재료 구입 7회

9,197,700원만 추진되었고, 2018년도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연간 방역소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질병예방과, 축수산과에서 질병예방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계획 수립을 요구한 시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3회 5,647,920원, 임차 및 재료구입 등 3건 1,591,180원만 추진되어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이 계획대비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은 37%, 방역소독은 32%에 머무는 등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요구】

탕정면장은

-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소기의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하자검사 미 실시 및 하자보수관리부 기록·관리 소홀
【부 서 명】 탕정면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없음
【지적내용】

가.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현황

구 분	계	2015년	2016년	비고
건 수	35	6	29	별첨[표1]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 책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명, 계약금액,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탕정면에서는 「방송시스템 외부스피커 설치 공사」 외 34건의 건설공사 준공 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분요구】

탕정면장은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

[표1]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현황

연번	사업연도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도급계약일	공사기간 (일수)	도급자 (대표)	하자보증기간
총계		35건					
소계	2015	6건					
1	2015	방송시스템 외부스피커설치 공사	9,190	2015.09.24.	2015.10.01.~ 2015.10.26. (25)	(주)★★ (F)	2015.10.22.~ 2016.10.21.
2	2015	탕정면사무소3층 체력단련실 샤워실 누수 보수공사	2,650	2015.11.23.	2015.11.24.~ 2015.12.09. (15)	(주)☆★ (G)	2015.12.08.~ 2017.12.07.
3	2015	ㄱ3리 농업용관정 에어써징 및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	7,000	2015.11.30.	2015.11.30.~ 2015.12.11. (12)	(주)☆○ (H)	2015.12.11.~ 2016.12.10.
4	2015	ㄴ3리 도로(배수로) 정비공사	12,748	2015.12.10.	2015.12.10.~ 2015.12.24. (25)	☆●(주) (I)	2015.12.24.~ 2018.12.23.
5	2015	탕정면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5,733	2015.10.01.	2015.10.01.~ 2015.10.15. (15)	☆○(주) (J)	2015.10.15.~ 2018.10.14.
6	2015	탕정어린이 영어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9,400	2015.09.01.	2015.09.02.~ 2015.09.16. (14)	☆◇ (K)	2015.09.11.~ 2016.09.10.
소계	2016	29건					
1	2016	탕정면사무소 사무실조명개선 공사	6,300	2016.01.07.	2016.01.08.~ 2016.01.18. (10)	☆◆(주) (X)	2016.01.16.~ 2017.01.15.
2	2016	탕정면사무소현 수막계시대 설치공사	5,973	2016.02.12.	2016.02.12.~ 2016.02.26. (14)	(주)☆□건설 (Y)	2016.02.25.~ 2018.02.24.
3	2016	탕정면ㄷ1리 농로 포장공사	7,543	2016.02.29.	2016.03.02.~ 2016.03.28. (28)	(주)☆■ (Z)	2016.03.28.~ 2019.03.27.
4	2016	ㄷ2리배수로 정비공사	3,891	2016.03.03.	2016.03.07.~ 2016.03.28. (22)	☆○(주) (J)	2016.03.28.~ 2019.03.27.
5	2016	탕정면소하천(ㄷ 천) 준설공사	4,912	2016.03.08.	2016.03.09.~ 2016.04.04. (26)	○□(주) (Z)	2016.04.04.~ 2019.04.03.
6	2016	탕정면 지방하천(ㄴ천, 용 두천)준설공사	9,797	2016.03.09.	2016.03.09.~ 2016.04.04. (26)	○□(주) (Z)	2016.04.04.~ 2019.04.03.
7	2016	ㄹ1리농로포장공 사	10,052	2016.03.10.	2016.03.14.~ 2016.03.25. (12)	○△(주) (V)	2016.03.26.~ 2019.03.25.
8	2016	ㅁ학교후문 가로화단 조성공사	3,100	2016.03.23	2016.03.23.~ 2016.03.27. (5)	□☆ (U)	2016.03.25.~ 2018.03.24.

연번	사업연도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도급계약일	공사기간 (일수)	도급자 (대표)	하자보증기간
9	2016	탕정면청사 화단정비사업	4,732	2016.03.24	2016.03.25.~ 2016.03.29. (4)	㈜□◎ (Q)	2016.03.30.~ 2018.03.29.
10	2016	ㄷ1리 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및 보수공사	5,000	2016.04.18.	2016.04.18.~ 2016.04.25. (8)	㈜☆○ (H)	2016.04.21.~ 2017.04.20.
11	2016	ㄱ1리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교체 및 보수공사	4,400	2016.04.25.	2016.04.25.~ 2016.05.11. (17)	㈜☆○ (H)	2016.05.09.~ 2017.05.08.
12	2016	ㄴ3리배수로 보수공사	9,825	2016.04.26.	2016.04.27.~ 2016.05.18. (22)	☆◎㈜ (J)	2016.05.18.~ 2019.05.17.
13	2016	탕정면농로 사리부설공사	1,483	2016.04.26.	2016.04.28.~ 2016.05.27. (30)	☆◎㈜ (J)	2016.05.27.~ 2019.05.26.
14	2016	ㄴ1리도로포장공 사	4,114	2016.04.26.	2016.04.27.~ 2016.05.27. (30)	☆◎㈜ (J)	2016.05.27.~ 2019.05.26.
15	2016	탕정면 행정복합 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	32,071	2016.04.28.	2016.04.28.~ 2016.05.17. (19)	㈜□○ (S)	2016.05.17.~ 2018.05.16.
16	2016	탕정게이트볼장 물받이 교체 및 수리	4,400	2016.05.02.	2016.05.02.~ 2016.05.18. (16)	□△ (T)	2016.05.18.~ 2016.05.17.
17	2016	ㄹ2리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11,715	2016.06.09.	2016.06.09.~ 2016.06.30. (22)	㈜☆■ (P)	2016.06.30.~ 2019.06.29.
18	2016	ㄹ2리양수장시설 보수공사	3,990	2016.06.20.	2016.06.20.~ 2016.06.29. (10)	㈜☆○ (H)	2016.06.28.~ 2017.06.27.
19	2016	탕정면ㄱ리 제방도로 제초 및 제방도로 응급복구공사	8,000	2016.07.27.	2016.07.29.~ 2016.09.05. (39)	㈜☆■ (P)	2016.08.25.~ 2019.08.24.
20	2016	ㄷ1리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 및 보수공사	3,610	2016.07.28.	2016.07.28.~ 2016.08.11. (14)	㈜☆○ (H)	2016.08.11.~ 2017.08.10.
21	2016	ㄴ2리배수로 정비공사	4,622	2016.08.05.	2016.08.09.~ 2016.09.05. (27)	☆●(주) (I)	2016.08.26.~ 2019.08.25.
22	2016	ㄷ1리배수로 정비공사	9,464	2016.08.05.	2016.08.09.~ 2016.09.20. (42)	☆●(주) (I)	2016.09.09.~ 2019.09.08.
23	2016	ㄹ1리도로환경정 비공사	13,457	2016.08.16.	2016.08.19.~ 2016.10.24. (35)	㈜□▽ (M)	2016.10.24.~ 2018.10.23.

연번	사업연도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도급계약일	공사기간 (일수)	도급자 (대표)	하자보증기간
24	2016	디리농업용관정 수중모터펌프교 체 및 보수공사	4,270	2016.09.29.	2016.09.29.~ 2016.10.10. (12)	(주)☆○ (H)	2016.10.10.~ 2017.10.09.
25	2016	ㄴ2리마을안길 정비공사	4,060	2016.10.18.	2016.10.18.~ 2016.11.04. (16)	☆●(주) (I)	2016.11.04.~ 2019.11.03.
26	2016	디리도로환경 정비공사	20,820	2016.11.14.	2016.11.15.~ 2016.12.12. (27)	☆●(주) (I)	2016.12.12.~ 2018.12.11.
27	2016	탕정면사무소CC TV 설치공사	2,220	2016.05.25.	2016.05.25.~ 2016.06.07. (13)	(합)□◇ (N)	2016.05.08.~ 2017.06.07.
28	2016	탕정면 ㄴ3리 마을회관 파고라 창호공사	4,836	2016.05.16.	2016.05.16.~ 2016.05.20. (5)	□◁ (O)	2016.05.17.~ 2017.05.16.
29	2016	탕정면 ㄴ리 및 ㄱ리 사리부설공사	3,933	2016.06.21	2016.06.22.- 2016.06.29.(8)	☆●(주) (I)	2016.06.28.- 2019.06.27

요구번호 : 1

현 지 처 분 요 구 서

2018년 탕정면 종합감사시(2018. 9. 10.~ 9. 12.)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하니 즉시 조치(앞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2018. 10. 11.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 문 국 (인)

대상기관	시행년도	처분요구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천원)	
탕정면	2018	시정완료	회수	20	

[제 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가. 현황

연번	출 장 현 황				지 급 현 황 (단위: 원)			사유
	구분	성 명	출장지	출장일시	적 정	지급액	과 다	
1	관외	AA	대전	20170524	24,000	34,000	10,000	관용차량 사용
2	관외	AB	대전	20170207	17,000	27,000	10,000	관용차량 사용

나. 위법·부당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3. 여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에는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에 따르면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복명 가능)'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제3항에서는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영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지급방법을 명시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1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처분요구 내용

탕정면장은

-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한 AA 외 1명에게 과다 지급된 일비 20,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